

함안 성산산성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 촌락사회와 지배방식

A Study on the village society and governing method in the 6th century of Silla examined with the wooden tablets of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저자 (Authors)	홍기승 Hong, Ki-seung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2 , 2019.6, 57-76(20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2 , 2019.6, 57-76(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5
APA Style	홍기승 (2019). 함안 성산산성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 촌락사회와 지배방식. 목간과문자, 22, 57-7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함안 성산산성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 촌락사회와 지배방식

홍기승*

- I. 머리말
- II. 촌락의 재편과 자연취락
- III. 6세기 '村'의 성격
- IV. 문서목간에 보이는 村主
- V. 맺음말

〈국문초록〉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6세기 신라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韓國의 古代木簡Ⅱ』에 최종 정리된 판독문을 토대로 6세기 신라 촌락사회의 양상과 그에 대한 지배방식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산산성 목간에는 村 이외에 '本波' '阿那' '末那' 등 이전의 금석문이나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村을 구성하던 자연취락으로, 목간의 기재 순서로 볼 때 행정체계상 村의 하위단위로 파악되었다. 다만 모든 자연취락이 목간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세한 것부터 대상으로 삼았으리라 추정된다. 村이 있음에도 굳이 자연취락 단계까지 기록한 데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연취락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촌락을 재편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던 의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고기 신라의 村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고기 사료에 보이는 村의 이해를 두고 크게 행정촌설과 자연촌설로 의견이 나뉘는데, 이러한 견해차는 '지명+촌명' 형식의 성산산성 목간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검토 결과 이 형식은 '郡名+행정촌명'이 아니라 '행정촌+자연촌'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기 村은 자연촌과 행정촌 두 가지 용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자연촌이 상위의 행정촌명을 생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략한 채 단독으로 목간에 기록될 수 있었던 점에서 자연촌을 지방지배의 기층 단위로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던 독자적인 단위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자연촌은 국가의 행정력에 의한 인위적인 재편을 거쳤다. 따라서 자연촌은 행정촌과 마찬가지로 지방지배를 위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역동원 관련 문서목간에 보이는 村主를 살펴보았다. 문서목간은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촌주가 지방관과 엄격한 상하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고기 촌주의 위상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촌주의 영향력은 촌락사회의 변동과 국가의 제약 아래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신라 중대가 되면 縣 단위 행정을 담당하는 말단관료적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핵심어: 성산산성, 목간, 자연취락, 행정촌, 자연촌, 촌주

I. 머리말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6세기 신라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성산산성 목간에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 많은 城·村名과 人名, 外位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신라 촌락사회와 지방 지배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간을 활용하여 6세기 신라 지방사회 전반을 검토한 연구들이 목간 발굴 초기부터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¹⁾

이 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연구 성과와 최근 발간된 『韓國의 古代木簡Ⅱ』의 판독문을 바탕으로²⁾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6세기 신라 촌락사회의 양상과 그에 대한 지배방식의 일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산산성 목간에서 자연취락의 존재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겠다. 목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던 ‘本波’ ‘阿那’ ‘末那’를 두고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6세기 신라의 촌락 지배 과정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풀어보고자 한다.

한편 많은 村名이 기록된 성산산성 목간의 발견으로 중고기 村은 행정촌과 자연촌으로 나뉜다는 시각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村’을 둘러싼 기왕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중고기 ‘村’의 성격을 재론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1) 함안 성산산성 목간 관련 주요 연구사 정리는 다음을 참조.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는 논의 과정에서 언급하겠다.

李京燮, 2004,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全德在,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이경섭, 2013, 「함안 城山山城 출토 新羅木簡 연구의 흐름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Ⅱ』.

2) 이 글의 목간 번호와 판독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의 국가귀속번호와 판독문을 우선 따랐다.

으로 村主명 문서목간과 관련 금석문을 활용하여 촌주의 변화 과정을 논하겠다. 그동안 村主는 중고기 지방사회의 최상위층으로 신라 지방지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은 이러한 이해와 상충되는 면이 적지 않다. 신라 중대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촌주의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글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성산산성 목간의 제작 연대를 560년 전후로 비정했던 통설에 비판이 제기되었고, 532년 또는 592년으로 추정되는 ‘壬子年’명 목간이 확인되면서 목간의 제작 연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목간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것이나, 글의 주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성산산성 목간이 6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II. 촌락의 재편과 자연취락

성산산성 목간 이전의 중고기 각종 금석문과 사료에서 村落은 ‘村’으로 통칭되었다. 촌락의 구체적인 모습이 ‘村’이란 명칭 아래 가려졌던 셈이다.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에는 ‘村’ 이외에도 촌락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관련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1 本波	앞면	뒷면
가야72	須伐本波居須智 √ ×	
가야1593	√ 夷津本波只那公未 □ (稗)	
가야1990	× … 本波破智(福) □ 古 □ … ×	× … 支云稗石 ×
가야2038	古 随 本波 豆 物 烈 智 □ √	(勿) 大 兮 √
가야2636	× (古) 随 一 古 利 (村) 本 波 √	× 随 々 支 稗 發 √
가야4685	古 随 一 古 利 村 本 彼 √	随 々 只 稗 發 √
가야1590	甘 文 城 下 麦 本 波 大 村 毛 利 只 √	一 石 √
가야4687	甘 文 城 下 麦 十 五 石 甘 文 √	本 波 加 本 斯 (稗) 一 石 之 √
가야5595	甘 文 城 下 麦 十 五 石 甘 文 本 波 ×	伊 次 只 去 之 ×
진주1268	甘 文 本 波 (居) (村) ³⁾ 且 利 村 伊 竹 伊	
진주1279	甘 文 城 下 麦 甘 文 本 波 王 (村) ⁴⁾ √	(文) 利 村 (知) 利 (兮) 負 √

3) 『韓國의 古代木簡Ⅱ』에서는 ‘居村’으로 추정했지만 바로 아래 ‘且利村’과 비교했을 때 ‘村’의 좌변이 서로 달라 확실히 ‘村’이라 할 수는 없다.

4) 『韓國의 古代木簡Ⅱ』에서는 ‘村’으로 추측했으나 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A-2 阿那	앞면	뒷면
가야29	夷津支阿那古刀羅只豆支∨	稗∨
가야44	夷津阿那休智稗∨	
가야50	仇伐阿那舌只稗石×	
가야2018	∨仇伐阿那内口買子	∨一支買 稗石
가야1623	古随伊骨村阿那∨	仇利稿支稗發∨
가야27	古随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稗發◎
가야2006	古随一古利村阿那弥伊口(久)∨	稗石∨

A-3 末那	앞면	뒷면
가야1987	仇伐末那 沙刀(礼)奴∨	弥次(分)稗石∨
가야5587	丘伐末那早尸智居伐尺奴	能利智稗石
가야30	古随一古利村末那∨	毛羅次尸智稗石∨
가야1992	古随一古利村末那∨×	殆利夫稗口∨×
가야1995	古随一古(利)村末那仇口…×	(稗)(石)×
가야2014	古随一古利村末那沙見∨	日糸利稗石∨

자료A에서 ‘本波’ ‘阿那’ ‘末那’라는 용어가 확인된다.⁵⁾ 이들은 목간에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고 반드시 지명 또는 村名에 이어서 기록되었다. 아직까지는 성산산성 목간에만 보이는 이 용어들은 古随, 甘文, 夷津, 仇伐 등 일부 지역의 목간들에 동시에 기록되었으므로 고유한 지명이나 인명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명과 연결지어 물품의 발송과 관련된 직명으로 풀이한 견해가 있으며,⁶⁾ 어떤 읍락(행정촌)의 발원이 되는 마을과 주변의 자연취락으로 보거나⁷⁾ 특정 방향 또는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本波’ ‘阿那’ ‘末那’의 의미를 두고 크게 직명 또는 공간으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현재로서는 정

5) 이밖에 ‘鄒文前那牟只村∨ / 伊口(習)∨’(가야2033)에서 ‘前那’를 추출하기도 한다. 다만 사례가 하나뿐이고 ‘前那牟只村’으로 읽을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6) 이수훈, 2010, 『城山山城 목간의 本波와 末那·阿那』, 『역사와 세계』 38.

7) 전덕재, 2007a,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종교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pp.227-231. 阿那를 川邊의 평야에 위치한 취락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本波/本彼’를 “本原의 의미를 가진 *本뵐(또는 *뵐뵐)”로 설명한 연구도 있다(權仁瀚, 2008, 『고대 지명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8) 李京燮,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新羅史學報』 23, pp.551-557. ‘那’를 어떤 지역(구역)을 의미한다고 보고, 고구려, 백제의 方位部의 경우처럼 阿那는 서쪽, 末那는 북쪽, 本波는 중앙의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이를 구체화하여 本波를 治所가 설치된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 pp.161-163).

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阿那’ ‘末那’에서 ‘那’의 일반적인 의미, 職名으로 이해할 경우 생겨나는 서식상의 불일치 등으로 미루어 전자의 견해는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古陁 목간 중 ‘고타+촌명’ 형식이 아닌 경우는 가야4688(‘古陁伊未(?)上干一大兮伐’)과 가야2038(‘古陁本波豆物烈智口V’)이 있다. 만일 本波 등이 村 내부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 어떤 방향과 범위에 있는 지역(구역)을 의미한다면 가야4688은 그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가야4688도 가야2038과 같은 방식으로 古陁 뒤에 本波나 阿那 등을 기록해야만 거주 구역이 분명해지고 표기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볼 때 本波 등이 방향이나 위치와 연관된 구역을 가리킨다고 하기도 어렵다.⁹⁾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들은 본래 어떤 지형적 특징을 가진 지역을 가리키던 용어가 轉化하여 그 지역 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즉 자연취락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특히 ‘本波’의 경우 목간에서 ‘阿那’ ‘末那’와 같은 위치에 기록된 점이 그 語義 등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발원지에 있던 자연취락이라는 견해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여겨진다.¹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산산성 목간의 ‘本波’ ‘阿那’ ‘末那’를 자연취락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연취락은 행정체계상 바로 앞에 기록된 村에 소속된 하위 단위로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호 간에 일정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리라 추정된다. 성산산성 목간에 기록된 자연취락을 가리키는 명칭들을 통해 기존 사료에서 ‘村’으로 표현된 공간이 실제로는 복수의 취락으로 구성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각 촌락의 형태나 규모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모든 村이 그러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형태에 대한 연구¹²⁾나 고대 日本의 사례로 볼 때¹³⁾ 복수의 취락으

9) 같은 양상은 ‘古陁—古利村’명 목간에서도 확인된다. 가야1998목간(古陁—古利村口…×)은 古利村 다음에 本波, 阿那, 末那가 기록되지 않았다. 명확히 읽히지 않지만 ‘—古利村’ 다음 글자는 기존에 알려진 本波, 阿那, 末那 등의 첫 글자가 아님은 확실하며 그 다음 글자는 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야1998은 목간의 주인공 乃兮支의 소속을 古利村까지만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만일 本波 등을 어떤 방향과 범위에 있는 지역(구역)이라면 乃兮支의 소속은 불분명하게 된다.

10) 6세기 신라 취락 유적은 대체로 구릉 말단부에서 곡부, 충적지 등 비교적 취락의 확대가 용이한 넓은 장소에 위치하였다고 한다(공봉석, 2014, 『신라의 주거와 취락』, 『신라고고학개론 上』, 진인진, pp.137-138). 이를 참고할 때 ‘末那’는 구릉 말단부를 가리키는 용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연지형을 거주단위를 표시할 때 사용한 사례로 중국 陝西省 富平縣에서 발견된 北魏 太昌 元年(532)의 樊奴子造像을 들 수 있다. 이 조상명에는 樊奴子가 거주하는 곳을 ‘北雍州 北地郡 高望縣 東鄉 北魯川’으로 기록하였다. 鄉 아래에 최종 거주단위로 北魯川을 명기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를 하천 자체가 아니라 그 인근에 존재했던 자연취락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侯旭东, 2005, 『北朝村民的生活世界—朝廷, 州县与村里』, 商务印书馆, p.33). 성산산성 목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다만 이처럼 이해할 때 甘文에서만 확인되는 ‘甘文+本波+村名’(예컨대 가야1590 ‘甘文本波大村’) 목간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마치 자연취락이 행정체계상 村의 상위 단위인 것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本波의 본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식은 해당 村이 상위 단위인 행정촌의 本波에서 분화되었음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해당 형식은 “甘文의 本波(에서 나온) ~村”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으며, 本波가 甘文과 村 사이의 중간 행정 단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왜 굳이 독립된 촌명만 쓰지 않고 本波를 앞에 기록하였는 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억측일 수 있겠지만 목간을 작성할 무렵 甘文의 本波에서 大村 등 여러 村이 새로이 형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목간 수신처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本波를 特記하여 해당 村의 신설 및 연속관계 변화 등을 분명히 한 것은 아닐까 추정해본다.

12) 「신라촌락문서」 D촌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그 村域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주목하고 오늘날의 취락-농경지

로 이루어진 村이 당시의 일반적인 유형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왜 일부 지역만 인명의 소속 단위를 자연취락 단계까지 기록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 기재 방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성산산성 목간은 일반적으로 행정촌 단위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므로, 각 지역의 목간 작성자가 자연취락의 기록 여부를 임의로 정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산산성 목간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 문서적 성격을 가졌으므로 정해진 기재 항목이나 순서 등을 준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작성자가 임의로 자연취락을 생략하거나 일부러 기록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경우로는 나머지 지역에는 자연취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자연취락은 모두 목간의 기록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17점으로 가장 수량이 많은 仇利伐 목간에서는 자연취락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반면 古陘 목간은 16점 가운데 10점이 확인된다.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만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면 仇利伐과 그 예하 3개 村의 모습이 주변의 다른 지역과 그만큼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시 각 지역 촌락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어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상의 논의로 보아 성산산성 목간에는 모든 자연취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 자연취락만이 목간의 기재 대상으로 선별된 셈인데, 그 기준과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우선 신라가 어떤 기준에서 자연취락을 선별하여 목간에 기록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성산산성 목간이나 「단양 신라 적성비」가 보여주듯이 신라는 6세기 중반 이미 연령별로 民을 파악하고 家戶별로 균일하게 곡물을 수취할 정도로 촌락의 사정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기왕에 조사된 家戶나 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을 선별하여 수취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세한 자연취락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丘伐 末那 목간이 주목된다. 가야5587 목간에는 “丘伐 末那에 사는 卑尸智 居伐尺의 奴 能利智”가 등장하는데, ‘居伐尺’은 卑尸智의 外位로 추정되며 能利智는 그의 私奴라 생각된다.¹⁴⁾ 가야1987에도 “沙刀(礼)의 奴 弥次(分)”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 丘伐 末那는 村의 중심취락만큼은 아니겠지만 奴를

간 평균 거리를 함께 감안하여 D촌은 3개 정도의 마을이 합쳐져 이루어졌다고 추정한 견해가 있다(李仁哲, 1996,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pp.117-122). 한편 朱甫喙, 2000a, 『新羅 中古期 村의 性格』, 『慶北史學』 23, p.192에서도 같은 村落 내에서 서로 떨어진 하위의 몇몇 취락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13) 이와 관련해 고대 일본의 ‘村’의 형성 원리에 대하여 농경의 기반인 경지나 관개, 山野의 用益 등에 따라 여러 개 집락이 합쳐진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일 집락이 바로 ‘村’인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연구가 참고된다(小林昌二, 2000, 『日本古代의 村落と農民支配』, 塙書房). 또한 일본의 奈良, 平安時代에는 10호 미만의 小村 혹은 주거지의 분포밀도가 매우 낮아 경지 사이사이에 흩어져 존재하는 疎塊村이 촌락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연구도 있다(金田章裕, 1985, 『古代·中世의 村落形態とその變遷』, 『条里と村落の歴史地理學研究』, 大明堂).

14) 奴(人)이 기록된 목간은 총 15점이며 지명이 확인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仇利伐이다. 奴(人)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앞에 人名이 붙는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私奴의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거느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외위를 소지한 이들이 사는 자연취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丘伐 외에는 자연취락과 관련된 목간에서 이러한 양상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촌락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목간에 기록된 자연취락 가운데는 위의 사례처럼 村의 중심취락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등한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해체하는 한편 그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취락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그 결과 일부 자연취락은 기존의 중심취락과 경제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이르거나 이를 뛰어넘어 촌락 내 주도권을 새로이 장악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6세기 중반 신라 촌락사회에서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성장해가던 자연취락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목간에 기록되지 않은 자연취락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된다. 촌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던 신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 즉 촌락사회를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국가의 일원적인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려 했으리라 짐작된다.

6세기 신라 지방지배의 기본단위는 村이었으므로 신라 입장에서는 일부 유력한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새로운 村을 편제하여 중심취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편이 국가의 의도에 훨씬 부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산산성 목간 단계의 지방지배는 여전히 村의 재지유력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기에 기존 질서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는 없으리라 추정된다. 설령 강제로 자연취락을 村으로 편제한다 해도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행정단위로서 원활히 기능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촌락사회에 직접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자연취락을 村으로 편제하기보다는, 자연취락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여전히 남아 있던 공동체적 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촌락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촌락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규모가 큰 자연취락부터 먼저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선별된 자연취락은 당연히 국가의 관심 대상이었으므로 지방지배 과정에서 성산산성 목간에서 보듯이 村名에 가려지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서 파악되었던 것이다.

신라가 자연취락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동체 질서의 기반이 수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연취락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는 소규모 단위 또는 개별 家戶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추정된다. 6세기 신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리시설의 축조, 우경의 정착 등 농업생산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던 것도¹⁵⁾ 이러한 신라의 지향점이

15) 金在弘,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91-210. 신라 철제농구가 5세기 중반부터 주변지구나 하위취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6세기 전반 이후에는 하위 집단으로의 유통이 가속화되었다는 견해도 참고가 된다(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韓國考古學報』 86, pp.108-112).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자연취락의 유력층에 외위를 수여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지배질서 안으로 편입하려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연취락의 성장과 독립을 유도하고 이들을 村으로 편제함으로써 촌락사회의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촌락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자연취락을 통해 당시 촌락사회의 변동 과정과 함께 신라가 이를 활용하여 촌락을 재편해나갔던 방식의 일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章을 바꾸어 자연취락의 상위 단위인 村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 6세기 '村'의 성격

앞서 언급했듯이 성산산성 목간의 자연취락은 인명의 소속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단독으로 기록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① 村이나 城이 붙지 않는 지명(古陘, 仇利伐 등) ② 城 ③ 村 세 유형은 목간에 단독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들은 독자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단위로 기능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단위는 '村'으로, 전체 목간의 1/3에 가까운 약 80점 가량을 차지하며 대략 60개 정도의 村名이 확인되어 가장 사례가 많다.¹⁶⁾ 村은 지명이나 城과 함께 기록되기도 했는데, 전자는 '지명+村'의 형식을 취하였다. 城의 사례는 거의 대부분 '城下' 형식의 목간에서 확인되는데 어떤 경우든 지명이나 城보다 村이 앞에 기록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한편 村名 목간 가운데 상단부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중에 맨 앞에 촌명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은 33점으로 村名 목간의 40% 가량 된다. 단독으로 기록된 목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村이 자연취락처럼 단순한 거주구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村은 신라의 지방지배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라 중고기 村의 성격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견해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촌설¹⁷⁾에서는 村이란 대개 小國 단계의 읍락단위를 편제한 것으로서, 일반 자연취락 가운데 크고 중심적인 자연취락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주변 소규모 취락을 지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단

16) 이밖에 城名은 29점에서 14개, 지명은 65점에서 13개 정도가 확인된다. 이 수치는 당연히 관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韓國의 古代木簡Ⅱ』, p.24에서는 총 103점을 村, 城을 기록한 목간으로 파악하였다.

17) 행정촌설의 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李銖勳, 1993, 「新羅 村落의 성격 - 6세기 금석문을 통한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 『韓國民族文化』 6 참고. 행정촌설의 관점에서 성산산성 목간을 활용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在弘, 2001, 앞의 논문; 李銖勳, 2007, 「新羅 中古期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城山城 木簡과 「冷水里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8; 이수훈, 2015,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7; 金昌鎬, 2018, 「咸安 城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49.

위였다. 6세기 사료의 城·村은 모두 행정촌으로 삼국통일 이후 郡縣의 前身이었으며, 초기에는 일부 村에만 지방관을 파견되다가 점차 신라 전역에 道使를 파견하였다고 보았다.¹⁸⁾ 또한 이 시기의 자연촌은 자연적인 거주단위로서 대체로 자연취락과 동일시하거나, 통일신라의 村에 국한된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⁹⁾

반면 자연촌설은 본래 금석문에 보이는 村에는 行政村과 自然村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²⁰⁾ 본래 자연촌을 뜻하던 村이 국가의 정식 행정단위로 정착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자연촌은 자연취락을 다수 포괄하면서 村名을 自稱한 自生的인 자연공동체이며, 행정촌은 이러한 자연촌 다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방관은 여러 자연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자연촌(중심자연촌)에 파견되었으며 행정촌의 이름은 행정거점이 있는 자연촌의 것을 따랐다고 추정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계속된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행정촌·자연촌의 개념 설정은 물론 당시 촌락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고기 自然村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견해차가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 행정촌설은 村을 국가가 촌락에 설정한 가상의 인위적인 단위로 이해하고, 중고기의 자연촌은 아직 자기완결성과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자연취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따른다면 국가의 공적 단위로서 村名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자연촌은 중고기에 존재할 수 없다. 반면 자연촌설은 村의 자연발생적 성격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행정촌은 이미 실재한 자연촌을 토대로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6세기 기록에 보이는 村名은 자연촌과 행정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村 사이에 행정적 상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차는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村’의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지명+촌명’ 목간의 해석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仇利伐上多者村’을 예로 들자면 자연촌설에서는 “(행정촌) 仇利伐의 (자연촌인) 上多者村”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행정촌설의 입장에서는 上多者村을 행정촌으로 보고 “仇利伐(郡)의 (행정촌인) 上多者村”으로 해석하면서 ‘郡’은 생략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촌명만 있는 목간도 앞에 군명이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당시 郡制의 미비로 郡은 생략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었고, 해당 인물의 출신지를 표기할 때 필수조건은 행정촌명이었다고 설명하였다.

18) 郡이 성립되는 6세기 중반에는 모든 성촌에 도사가 파견되었다거나(金在弘, 2001, 위의 논문), 6세기 말 남산신성비 단계에는 신라 전역의 성촌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고 본다(이수훈, 2015, 위의 논문).

19) 자연취락이 자기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서 국가에 의해 편제되어 村단위로 존재할 경우를 자연촌으로 규정한 견해(金在弘, 2003, 「新羅 統一期 專制王權의 강화와 村落支配」, 『新羅文化』 22, p.129의 주56)가 참고된다.

20) 자연촌설의 주요 내용은 朱甫噉, 2000a, 앞의 논문 및 朱甫噉,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8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밖에 자연촌설의 시각에서 성산산성 목간을 검토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朱甫噉, 2000b,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尹善泰, 2002, 「新羅 中古期の 村과 徒-邑落의 解體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5; 전덕재, 2007a, 앞의 논문; 전덕재, 2007b,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제와 郡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8; 李京燮, 2011, 앞의 논문.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에서 ‘郡’이란 명칭은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仇利伐을 비롯한 촌명 앞에 기록된 단위가 郡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뒤에 村名이 있으므로 郡을 적지 않아도 충분히 郡名으로 통용 되었을 것이라 설명하였지만, 郡과 村이라는 서로 다른 행정단위가 동시에 기록되는 상황이라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郡을 표기해야 마땅하다. 古陴 등 일부 지명이 『三國史記』地理志에 郡으로 표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邑格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목간에 郡名이 기록되었다면 목간의 제작이 적어도 郡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²¹⁾ 하지만 그동안의 중고기 신라 지방지배에 관한 연구들은 중고기 행정촌이 지방지배의 중심이었다고 이해해왔다.²²⁾ 그렇다면 郡 단위가 수취와 관련된 목간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지역에 따라 郡의 행정력이 차이가 나 일부 郡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취에 관여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²³⁾ 목간의 내용만으로는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산산성 목간에서 ‘大村’명 村이 다수 확인된다. ‘大村’명 목간은 단독으로 기록되기도 했지만(가야51 ‘大村主軀麥’, 김해1286 ‘大村伊息智一伐’), 小南兮(城) 예하(가야5596 ‘小南兮城麥十五斗石大(村) …’), 甘文 예하(가야1590 ‘甘文城下麥本波大村毛利只’)의 村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행정촌설에 따르면 甘文과 小南兮(城)은 郡名이고 大村은 행정촌명이 되는데, 서로 다른 郡에 同名의 행정촌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大村만 나오는 목간도 있으므로 甘文과 小南兮(城)에도 속하지 않는 同名異村이 존재했을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지방관이 파견되는 단위였다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촌명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명+촌명’ 목간을 ‘郡+행정촌’으로 볼 수는 없으며, ‘행정촌+자연촌’ 형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앞의 행정촌명은, 鄒文村(가야1607 ‘鄒文村內且利負’)이 ‘鄒文+村名’으로 기록되어 예하의 자연촌과 함께 기록될 때 村을 생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촌명에서 ‘村’을 생략하는 식으로 표기하여 행정촌임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행정촌만이 아니라 그 예하에 있었다고 하는 자연촌도 존재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에는 ‘지명+촌명’ 형식뿐만 아니라 ‘村名+인명’ 형식의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鄒文村, 買谷村, (小)伊伐支村, 及伐城 등 일부는 『三國史記』 및 6세

21) 金在弘, 2001, 앞의 논문, p.98에서 郡이 국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단위로 기능하였다고 보았다. 橋本 繁도 필체 분석을 통해 목간이 仇伐, 古陴, 仇利伐 등 郡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2009, 『城山山城木簡と六世紀新羅の地方支配』,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22) 6세기 郡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철구역(李鉄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釜山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p.106-124), 군사적 성격(朱甫喙,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pp.110-127; 전덕재, 2007b, 앞의 논문, pp.103-118), 수취 또는 역역동원을 위한 단위(金在弘, 2001, 앞의 논문, pp.100-103; 박성현, 2013, 『신라 郡-城·村制의 특징과 郡縣制로의 전환』, 『韓國史研究』 163, pp.80-84) 등 의견이 다양하다. 하지만 6세기 지방행정체계에서 郡은 中代와 비교했을 때 여러 행정촌을 관할하는 중간 행정단위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지방지배의 중심은 행정촌이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23) 김창석, 2016, 앞의 논문, pp.170-173.

기 금석문에서 소재를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거나 ‘지명+촌명’ 목간에서 지명 부분에 해당된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村을 행정촌으로,²⁴⁾ 각종 자료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당수의 나머지는 자연촌으로 간주하였다.²⁵⁾

하지만 행정촌으로 분류된 목간 역시 엄밀히 말하면 행정거점이 설치된 자연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정촌은 예하 자연촌 전체를 아우르고 대표한다는 의미와 함께 행정거점이 설치된 중심자연촌과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²⁶⁾ 예컨대 ‘추문촌’은 比尸河村, □□□村, 前那牟只村 등을 관할로 두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위를 일컫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거점이 소재한 중심자연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鄒文村內坦利負’의 추문촌의 용례는 어디에 해당될까. 만일 추문촌이 여러 村을 아우르는 행정촌이라 한다면, 內坦利의 출신지가 불분명해진다. 이 목간을 제외하면 추문명 목간은 ‘추문+촌명’ 형식으로 기록하여 인명의 출신지를 자연촌 단계까지 표시하였다. 따라서 ‘鄒文村內坦利負’의 추문촌도 여러 자연촌을 관할하는 행정촌이 아니라 행정거점이 설치된 중심자연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다른 추문명 목간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村名이 붙지 않은 고타, 구리별 목간 역시 예하 村 없이 기록될 때는 거점으로서의 행정촌 즉 중심자연촌의 의미로서 목간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²⁷⁾ 이러한 원칙은 城을 표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촌명+인명’ 목간에서 행정촌에 해당되는 村名 역시 실제로는 자연촌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촌명과 인명이 함께 확인되는 모든 성산산성 목간에는 자연촌이 기록된 셈이 된다. 이는 당시 촌락이 자연촌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국가에 파악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상위의 행정촌명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목간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촌을 단지 자연적인 거주단위나 자연취락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지방행정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던 독자적인 단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연촌만 목간에 기록할 수 없을뿐더러 상위의 행정촌만 밝혀도 충분했을 것이다.

당시 자연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앞서 본 자연취락의 기재 방식에

24) 전덕재, 2007a, 앞의 논문, pp.236-237에서는 ① 금석문 등에서 지방관 파견이 확인된 곳 ② 「三國史記」地理志에서 비정이 가능한 곳 ③ ‘지명+촌’ 형식의 목간에서 앞의 지명인 경우를 행정촌으로 정의하였다.

25) 물론 행정촌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체제 정비 과정에서 혹은 촌락의 변동으로 인해 미처 기록에 남지 못한 채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므로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村 가운데 행정촌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한편 필체 분석을 통해 勿利村, 次々支村이 買谷村, 鳥欣彌村, 上莫村, 陽村이 급별성 소속 자연촌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도 참고가 된다(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pp.82-83).

26) 전덕재, 2007b, 앞의 논문, p.99.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도사가 파견된 자연촌 및 城은 통치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거점성·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중심으로 묶이는 단위를 행정촌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박성현, 2013, 앞의 논문, p.79)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7) 고타, 구리별은 인명만 기록될 경우 추문촌과 달리 고타촌, 구리별촌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목간 작성자가 ‘지명+촌명’ 형식의 목간을 작성하면서 ‘村’을 생략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런 형식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어쩌면 추문촌의 경우가 예외적일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쪽이든 의미는 통했을 것이다.

서 볼 때 여러 자연취락을 관할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인명의 소속 표기에서 기본 단위이자 독립된 단위로서 기록될 수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자연촌을 단위로 戶口를 파악하여 戶籍이나 計帳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연촌을 단위로 수취를 1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업무는 행정촌에 있는 지방관의 감독 하에 각 자연촌의 외위소지자 등 유력층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산산성 목간 단계에서 자연촌은 지방지배의 기층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그런 면에서 자연촌은 단순한 거주구역이 아니라 행정촌과 같이 정치적,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촌에 비하면 제한적이겠지만 일정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란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촌은 국가가 지방지배를 위해 관할 범위를 설정하거나 특정 자연촌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행정거점을 만드는 등의 인위적인 재편을 통해 창출한 단위였다. 그렇다면 행정촌 예하의 자연촌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까. 자연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촌이 정식 행정단위로 파악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자연발생적인 지역공동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재편과는 무관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촌이 설령 처음에는 신라의 의도와 관계없이 自生한 것이고 村名도 해당 주민들이 自稱하였다 하더라도, 신라가 국가의 행정단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整地 작업, 예컨대 해당 村의 현황 조사, 영역²⁹⁾ 및 영속 관계의 조정, 유력층의 처우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이는 행정촌설에서 주장한 인위적, 구획된 단위로서의 성격을 자연촌 역시 가졌음을 의미한다.³⁰⁾ 자연촌도 엄밀하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편제한 단위라는 지적은³¹⁾ 그런 면에서 매우 타당하다.

결국 6세기 신라의 자연촌은 국가가 지방지배를 목적으로 재편한 단위로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된 행정촌과 차이점만 강조했을 뿐 자연촌 또한 지방지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단위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대신 자연촌을 기반으로 하면서 村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재지유력층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여기에는 자연촌 관련 사료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연촌을 국가가 설정한 행정촌과 상반되는, “일정한 독자성을

28) 전덕재, 2007a, 앞의 논문.

한편 주장에 불과하지만, 村 단위로 戶籍이나 計帳을 작성할 때 자연취락 별로 다시 세분하여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를 근거로 성산산성 목간에 기록할 자연취락을 선별하였을 것이다.

29) 당시의 村은 복수의 자연취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1개 村의 관할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30) 특히 이러한 경향은 城村制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새롭게 등장한 村에서 더욱 두드러졌을 텐데, 성산산성 목간의 新村, 大村 등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한자식 명칭의 村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31) 전덕재, 2007b, 앞의 논문, p.238. 편제된 단위로서의 ‘村’이 가장 일찍 확인되는 사례로 「포항 중성리 신라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于居伐, 蘇豆古利村, 那音支村, 珍伐의 순으로 4개 지역명이 기록되었다. ~伐과 달리 ~村의 유력층만 干支, 壹金智 등 위계호를 칭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신라가 편제한 지역에 村名을 부여했다고 추정한 견해가 참고된다(홍승우, 2013, 「浦項中成里新羅碑」를 통해 본 新羅의 部와 지방지배, 『한국문화』 66, pp.221-227).

가진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³²⁾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자연촌의 중요한 속성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자연촌이 행정단위로서 가지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연촌을 이해한다면 當代 신라인들이 금석문이나 목간에 단지 '村'으로만 표기한 이유도 유추할 수 있다. 만일 행정촌과 자연촌이 기능과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자가 별개로 인식되었다면 똑같이 '村'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아예 단위를 달리 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구분 없이 村名을 쓰는 표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양자 모두 당대인의 눈에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동일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비록 지방관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지방관의 거점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村으로 옮길 수 있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³³⁾

이상으로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村名을 중심으로 신라의 村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6세기 신라 문자 자료의 '村'은 행정촌과 자연촌 두 가지로 용례를 나눌 수 있다. 자연촌은 행정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방지배를 위해 재편한 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IV. 문서목간에 보이는 村主

성산산성 목간은 거의 대부분 하찰목간이다. 그렇다면 물품의 수취와 목간의 제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비록 목간 자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할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6세기 신라 지방지배의 기초 단위가 村이었으므로 물품의 수취는 村別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村에서 거둬들인 곡물을 다시 수합하고 정리, 확인한 후 목간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작업이 행정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촌에 파견된 지방관 혼자서 책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³⁴⁾ 중고기 행정촌 단위로 각 촌의 재지유력층이 참여하는 村司가 존재하였다. 村司에 참여한 재지유력층은 대개 外位 소지자였고, 일부는 匠尺, 文尺처럼 일정한 職名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관은 村司를 통해 촌락을 지배하였으며 재지유력층 역시 村司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上干支(3점), 一伐(11점), 一尺과 阿尺(각 1점) 등의 외위와 함께 及伐尺, 居伐尺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위까지 확인된다. 이러한 외위를 가진 이들은 물론이고 외위를 갖지 않았

32) 朱甫暉, 1996, 「6세기 新羅의 村落支配 強化 過程」, 『慶北史學』 19, p.7의 각주 17.

33) 그런 점에서 행정촌 이외의 村을 '自然村'으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자연'이라는 접두사의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또 '자연촌'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6세기 신라의 村은 형태적, 정치적으로 단지 자연형성된 취락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당대의 표현 그대로 '村'으로 칭하는 편이 당시 사정에 부합해 보인다.

34) 朱甫暉, 1988,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司」, 『韓國古代史研究』 1.

지만 私奴를 거느릴 정도의 유력층까지 아마 村司의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아마도 村別 물품 수취에서부터 목간의 제작에 이르는 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들이 村司에 참여 하면서 가졌을 만한 職名이나 役名은 하찰목간에서 찾을 수 없는데, 다행히도 문서목간에서 村主를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³⁵⁾

먼저 가야5598은 역역동원과 관련하여 眞乃滅村主가 □城에 있는 弥卽余智 大舍와 下智에게 伊毛羅 及伐尺가 저지른 어떤 위법 사안을 보고하는(‘懜怖白’) 내용이다. 아마도 진내멸촌주는 伊毛羅 及伐尺이 맡은 업무의 중간관리자로서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여기서 ‘眞乃滅’은 일반적으로 촌주의 출신 村名으로 이해된다. 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촌주가 있던 곳이므로 행정촌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야2645에서는 ‘□多馮城□(者)村主’가 확인된다. 판독이 어려워 촌주 앞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眞乃滅村主의 예로 볼 때 村名을 관칭한 촌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목간 역시 역역동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하는(‘敬白之’)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문서목간은 얼마 안 되는 중고기 村主 관련 자료이자³⁶⁾ 당시 체계적인 문서행정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목간의 문장이 ‘~村主白’의 형식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白’은 신라 문자자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뢴다’ 또는 ‘사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가야 5598의 경우 보고의 주체인 진내멸촌주가 아랫사람이, 보고를 받는 弥卽余智 大舍와 下智는 윗사람이 되는 셈이다. 특히 “괴롭고 두려워하며 아뢴다”로 해석되는 ‘懜怖白’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다. 상투적인 문구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진내멸촌주와 弥卽余智 大舍와 下智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단적으로 반영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보고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알 수 없으나 大舍라는 경위 관등으로 미루어 弥卽余智는 중앙에서 파견된 道使였을 가능성이 높다.³⁷⁾

가야5598을 위와 같이 촌주가 지방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그 안에 담긴 村主의 모습은 기존의 이해와 상충되어 보인다. 그동안 촌주는 干屨 가운데에서도 일부 최상층 首長에게만 주어진 직명으로, 郡마다 2인 정도만 임명된 것으로 추정해왔다.³⁸⁾ 금석문에 ‘郡中上人’으로 기록되기도 한 촌주는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郡司의 상층부를 구성하였으며, 지방관과 협의를 통하여 郡政을 이끌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中代로 가면서 郡이 아닌 縣 단위로 복수의 촌주가 임명되었으며 그 지위도 크

35) 두 문서목간의 판독과 대략적인 내용은 윤선태, 2017, 앞의 책, pp.491-492를 참고.

36) 성산산성 목간 출토 이전에 ‘村主’가 나오는 중고기 문자자료는 浦項 冷水里 新羅碑, 昌寧 新羅 眞興王 拓境碑, 慶州 南山新城碑 第1碑, 河南 二聖山城 木簡 등에 불과하다.

37) 수신처로 추정할 만한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가야2645도 가야5598처럼 지방관에게 보내는 문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야 2645 목간에 대해서는 이용현, 201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221번의 국어학적 의의」, 『口訣研究』 34 참고.

38) 朱甫噉, 1988, 앞의 논문; 姜鳳龍,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한편 모든 村에 村主가 임명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를 차출하여 郡政에 참여시켰다고 보기도 한다(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게 저하되었다고 이해하였다.³⁹⁾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중고기 촌주는 재지유력층 가운데 최상위층으로서 지방관과 거의 대등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 ‘外村主’가 여러 지방관과 병렬적으로 기록되고 인명 부분 마지막에 述干 외위를 가진 촌주 2인이 기재된 점, 이성산성 목간에서 道使와 村主가 나란히 수신 대상으로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이해가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산산성 목간 속의 村主들을 보면 그러한 면모를 중고기 모든 촌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물론 「창녕비」와 같이 새롭게 신라로 편입된 지역이라면 촌락을 재편하는 과정 초기에는 村主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이다. 또는 이성산성처럼 원활한 지방지배를 위해 재지유력층의 협력이 절실했을 변경지역의 촌주라면 독자성을 발휘할 공간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지배력을 강화해나갔던 신라가 이러한 촌주의 권위를 계속 인정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촌주를 임명하거나 촌주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또는 아예 기존 촌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촌주의 권한과 영향력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목간에서 촌명을 관칭한 데서 알 수 있듯이 村主는 비록 郡 단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村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촌주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村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6세기 촌락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촌주의 기반이 약화되어 다른 재지유력층의 도전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을 텐데, 그 결과 촌주는 점점 지방관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기 촌주의 위상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촌주의 영향력은 촌락사회의 변동과 함께 국가의 제약 아래 축소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촌주는 재지유력층의 대표자가 아니라 신라 중·하대와 같이 村主位畵를 받고 그 대가로 직무를 수행하는 말단관료적 존재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진내멸촌주의 사례는 그러한 흐름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맥락에서 중고기 금석문에 보이는 ‘郡中上人’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경주 남산신성비」제1비 B집단의 ‘郡上村主’를 “郡의 촌주”로 해석하고 이를 ‘郡(中)上人’와 동일하다고 간주해왔다. 여기에는 “郡의 윗사람(上人)”이 될 만한 최상위 재지유력층은 촌주 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郡中上人=村主’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그러한 등식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39) 朱甫墩, 1989, 「統一期 新羅 地方統治制度의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 『大丘史學』 37, pp. 49-52.

40) 하대의 사례지만 촌주 祐連과 같이 村主 직위는 세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의 外位를 반드시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郡의 上人”이 촌주 이외의 郡司 내 다른 외위소지자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⁴¹⁾ 그렇다면 제1비와 달리 제2비, 제9비에서는 村主가 郡을 대표하는 上人 2인에 해당되지 않은 셈이 된다. 예컨대 제2비의 군중상인인 沙刀城의 平西利之와 久利城의 首△利之는 촌주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를 해당 郡에 촌주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⁴²⁾ 당시 촌락의 사정이나 이후 촌주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과 연결해본다면 촌주들이 존재했음에도 과거와 같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최상위 재지유력층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어 조심스럽지만, ‘군중상인’의 사례 또한 촌주가 본래의 수장적 성격에서 中代 이후 지방지배의 행정 말단을 담당하는 존재로 탈바꿈해가던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성산산성 목간에는 村 이외에 ‘本波’ ‘阿那’ ‘末那’ 등 이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자연취락을 뜻하는 용어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연취락들은 행정체계상 村의 하위단위로 파악되었다. 다만 모든 자연취락이 목간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세한 것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리라 추정된다. 당시 신라는 일부 자연취락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촌락을 재편하고 촌락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목간 속 자연취락은 그러한 정책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명+촌명’ 형식의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중고기 村의 용례를 자연촌과 행정촌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목간에 자연촌이 상위의 행정촌명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목간에 기록될 수 있었던 점에서 자연촌을 지방지배의 기층 단위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던 독자적인 단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촌 역시 행정촌처럼 국가의 행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편된 단위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연촌은 행정촌과 마찬가지로 지방지배를 위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역역동원 관련 문서목간에서 村主가 확인되었다.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문서목간 속 村主는 지방관으로 추정되는 보고 대상과 철저한 상하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중고기 촌주의 위상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촌주의 영향력은

41) 역역동원 과정에서 촌주에 버금가는 재지유력층에게 上人이란 직책을 주고 촌주와 같은 역할을 맡겼을 것이라 견해가 참고된다(李宇泰, 1991, 『新羅 中古期の 地方勢力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p.126-128). 또한 ‘군상촌주’를 ‘役名(郡上)+職名(村主)’로 나누고 ‘郡上’은 ‘郡上人’ ‘郡中上人’과 동일하다고 본 연구도 있다(橋本 繁, 2013, 『中古期 新羅 築城碑의 연구』, 『동국사학』 55, pp.148-149). 만일 그렇다면 郡司 구성원 가운데 村主의 직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거나 높은 外位를 가진 인물이 ‘郡上人’의 役名을 가지고 역역동원을 주관했을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42) 橋本 繁, 2013, 위의 논문, pp.150-151. 이 견해는 금석문에 촌주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기 촌주의 수가 매우 적었다고 추정하였다.

촌락사회의 변동과 국가의 제약 아래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추정된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로 바로 지방지배의 행정 말단을 담당하던 中代의 촌주로, 가야5598의 진내멸촌주나 「경주 남산신성비」에 보이는 '郡中上人'은 그 과도기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상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6세기 문자자료나 주거유적에 대한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머리말에서 언급했지만 논의의 중요한 전제인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촌락사회의 변동과정이나 지배방식의 변화상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부족한 점은 차후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줄 새로운 문자자료와 고고학적 성과들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투고일: 2019. 4. 02.

심사개시일: 2019. 5. 01.

심사완료일: 2019. 5. 19.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Ⅱ』.
- 李仁哲, 1996,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朱甫暉,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신라고고학개론 上』, 진인진
- 金田章裕, 1985, 『条里と村落の歴史地理学研究』, 大明堂.
- 小林昌二, 2000, 『日本古代の村落と農民支配』, 塙書房.
- 侯旭东, 2005, 『北朝村民的生活世界-朝廷, 州县与村里』, 商务印书馆.
- 姜鳳龍,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權仁瀚, 2008, 「고대 지명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 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 金在弘,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金在弘, 2003, 「新羅 統一期 專制王權의 강화와 村落支配」, 『新羅文化』 22.
- 金在弘, 2005, 「咸安 城山山城 木簡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 金在弘, 2015, 「신라 중고기 道使의 운영과 성격 변화」, 『한국학논총』 44.
- 김창석,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54.
- 金昌錫, 2017, 「咸安城山山城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
- 金昌鎬, 1990, 「金石文 자료로 본 古新羅의 村落 構造」, 『郷土史研究』 2.
- 金昌鎬,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49.
- 박성현, 2013, 「신라 郡-城·村制의 특징과 郡隸制로의 전환」, 『韓國史研究』 163.
- 尹善泰, 2002, 「新羅 中古期の 村과 徒-邑落의 解體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25.
-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사림』 41.
- 윤선태, 2016, 「新羅의 初期 外位體系와 ‘及伐尺」, 『동국사학』 61.
- 李京燮, 2004,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 李京燮,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新羅史學報』 23.
- 이경섭, 2013, 「함안 城山山城 출토 新羅木簡 연구의 흐름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 李京燮, 2018,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사학연구』 132.

- 李銖勳, 1993, 「新羅 村落의 성격 - 6세기 금석문을 통한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 『韓國民族文化』 6.
- 李銖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釜山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銖勳, 2007, 「新羅 中古期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城山山城 木簡과 「冷水里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8.
- 이수훈, 2010, 「城山山城 목간의 本波와 末那·阿那」, 『역사와 세계』 38.
- 이수훈, 2015,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7.
- 이용현, 201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221번의 국어학적 의의」, 『口訣研究』 34.
- 李宇泰, 1981, 「新羅의 村과 村主 -三國時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李宇泰, 1991, 「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韓國考古學報』 86.
- 전덕재, 2007a,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전덕재, 2007b,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郡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8.
- 全德在,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 朱甫噉, 1988, 「新羅 中古期의 郡司와 村司」, 『韓國古代史研究』 1.
- 朱甫噉, 1989, 「統一期 新羅 地方統治制度의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 『大丘史學』 37.
- 朱甫噉, 1992, 「新羅의 村落構造와 그 變化」, 『國史館論叢』 35.
- 朱甫噉, 1994, 「南山新城의 築造와 南山新城碑-第9碑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0·11.
- 朱甫噉, 1996, 「6세기 新羅의 村落支配 強化 過程」, 『慶北史學』 19.
- 朱甫噉, 2000a, 「新羅 中古期 村의 性格」, 『慶北史學』 23.
- 朱甫噉, 2000b,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19.
- 朱甫噉,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8.
- 홍기승, 2009, 「6세기 신라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와 ‘村」, 『한국고대사연구』 55.
- 홍승우, 2013, 「浦項中成里新羅碑」를 통해 본 新羅의 部와 지방지배」, 『한국문화』 66.
- 橋本 繁, 2009, 「城山山城木簡と六世紀新羅の地方支配」,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 橋本 繁, 2013, 「中古期 新羅 築城碑의 연구」, 『동국사학』 55.

<Abstract>

A Study on the village society and governing method in the 6th century of Silla examined with the wooden tablets of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Hong, Ki-seung

Wooden tablets from the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 Haman are an essential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6th century Silla local society. Based on research results and character reading in 『韓國의 古代木簡Ⅱ』, this article looked at the aspects of Silla's village society in the 6th century and its governing method.

In Wooden tablets, terms not found in other materials such as Bonpa(本波), Ana(阿那), Malna(末那) are identified. These are the natural villages(自然聚落) that made up the Chon(村), and the sub-units of the Chon in the system of local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assumed that not all natural villages are listed in wooden tablets, but economically and socially dominant one is recorded first. Silla intended to reorganize the village society and strengthen its governance system by inducing and supporting the growth of natural villages.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hon in the 6th century. These differences are also se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Chon' typ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is type should be read as 'Administrative Chon(行政村)+Natural Chon(自然村)'. Therefore, Ch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Natural Chon and Administrative Chon. A Natural Chon should be regarded as a primary unit of local control and an independent unit that played an administrative role. And it went through artificial reorganization by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tate. Thus, a Natural Chon can be said to have the character of an administrative unit set by the state for local governing like the Administrative Chon.

Finally, I Analyzed the leader of villages(村主) in the wooden documents related to labor mobilization. These documents show that the leader of villages was in a strict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or, unlike the general understanding. It can also be inferred that the status of the leader of the 6th century varied according to region and time. At the same time, the influence of the leader of villages gradually decreased under the fluctuation of the village society and the constraints of the state, and finally transformed into a low-level official in charge of unit administration of Hyeon(縣) by the middle period of Silla.

▶Key words: Seongsan Mountain Fortress, the wooden tablets, natural village, Administrative Chon, Natural Chon, leader of villages